

URDG 하의 지급청구를 위한 제시요건과 그 일치성 기준

채 진 익*

-
- I. 서 론
 - II. 은행보증의 발급과 지급청구의 요건
 - III. 서류조건의 심사기준과 그 일치성
 - IV. 비서류 조건의 심사기준과 그 요건
 - V. 결 론
-

주제어 : 은행보증, URDG, 지급청구, 서류심사기준, 제시의 일치성

I. 서 론

은행보증제도는 기업이 국내외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특히 기업이 그 비즈니스의 수행과정에서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은행보증제도는 신용장 거래와 마찬가지로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부교수

가지로 보증수익자의 지급청구에 대한 지급은 제시서류의 일치성을 전제로 이행되며, 그 준거법원으로 URDG(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 청구보증통일규칙)가 적용된다.

URDG는 1978년 제정·공포되어 시행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URDG 758은 원칙적으로 URDG 458의 대부분을 승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급청구, 서류심사, 지급거절 등 개정된 여러 조항과 신설된 조항은 UCP 600의 이념과 원칙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된 URDG 758은 개정·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현 시점에서 은행보증의 지급청구와 그 절차에 있어서 URDG의 적용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서류심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증거래를 확대하고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유용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URDG의 적용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유의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급청구에 대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각 제시의 일치성 기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은행보증거래에서 절차적으로 핵심이 되는 지급청구와 서류심사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은행보증거래에서의 지급청구를 위한 제시의 심사기준은 UCP 600의 요건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일치성의 범위에 대해 개정 URDG 758 제2조에서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URDG 758 제19조 (b)항에서는 “보증서에 요구된 서류상의 자료는 그 서류, 보증서 및 이들 규칙의 맥락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그 서류나 명시된 기타 모든 서류 또는 은행보증서상의 자료와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이와 상충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UCP 600 제14조 (b)항에서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심사원칙은 URDG에서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¹⁾ URDG상의 개정된 주요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UCP 600과 ISP98과 비교·검토함으로써 지급청구와 그 지급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부당청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은행보증거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급청구를 위한 제시와 그 일치성 기준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과 유의점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선행연구에는 김종철, 김선광, 김선국, 김상만, 문희철, 박세운, 박석재, 박광서, 이상훈, 한재필, 서경두, 한기문, 허해관, 채진의 등의 연구논문이 있다.

Ⅱ. 은행보증의 발급과 지급청구의 제시요건

1. 은행보증의 발급과 그 지급청구

은행보증제도는 권리담보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담보력 또는 신용이 미약한 기업에 은행의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국내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한다. 은행보증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담보할 목적으로 사용하며, 약정기한에 보증의뢰인이 보증수익자에게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약정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은행이 보증의뢰인을 대신하여 약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도이다. 상업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은행보증은 거래처인 보증의뢰인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하는 것이다.²⁾

이와 같은 은행보증의 거래는 우선 보증의뢰인이 보증담보를 위해 자신의 거래은행과 은행보증을 보증신청을 의뢰한다. 반면 보증은행은 그 의뢰인과 상담과정을 통하여 당해 보증내용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증신청에 대한 요건심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파악하여 보증의뢰인에게 보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그 다음 은행은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당해 사업의 타당성 등과 제반 요건을 심사하여 은행보증서의 개설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그 결과 은행보증서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면 보증의뢰인의 상대방을 보증수익자로 하는 은행보증서의 개설절차에 들어간다. 이때 보증의뢰인은 은행과 보증계약의 절차에 따라 보증신청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서명하고, 필요시 담보계약 등을 체결한다. 그리고 그 보증서에는 보증수익자가 지급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시 제시해야 할 서류와 방법을 명시한다.

그 다음 은행보증서를 발급하여 통지은행을 통하여 보증수익자에게 발송한다. 이 때 보증수익자는 은행보증서를 수령하면, 그 보증서에 규정된 조항을 검토한다. 물론 그 보증서에 문제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당해 조건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2) Carnell, National Bank Lending Limit Rules 12 C.F.R. Part 32, August 25, 2006: 채진익, "글로벌 전자무역에서 은행보증제도의 도입과 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4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8, 221면.

그리고 보증수익자가 은행보증서의 근거나 된 기초계약의 의무불이행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보증수익자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진술서와 약정서류를 보증은행에 제시하여 보증금액을 청구한다. 이에 보증은행은 그 지급청구에 대한 요건을 심사하여, 그 지급청구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 없이 보증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³⁾

그 후에는 보증은행은 보증의뢰인으로부터 지급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상환을 받고, 당해 제시서류를 보증의뢰인에게 발송한다. 그런데 만약 보증의뢰인이 보증수익자의 지급청구와 보증은행의 지급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그 자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 지급청구의 제시요건

(1) 지급청구와 그 제시

은행보증거래도 신용장거래와 마찬가지로 지급 또는 상환은 은행보증서에 약정된 서류를 제시하여 지급청구를 한다.⁴⁾ 그 제시는 유효기일 이전에 발행 장소 또는 보증서에 명시된 다른 장소에 제시되어야 하며, 그 제시는 유효기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제시가 추후에 완료된다는 명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리고 은행보증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에는 그 은행보증서상에 그러한 제시를 위한 형식, 즉 데이터 송신시스템 및 전자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그 은행보증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류는 인증이 가능한 어떠한 전자적 형식 또는 종이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인증될 수 없는 전자서류는 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⁵⁾

전자 또는 종이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든 제시는 종이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제시는 보증서에 대해 보증은행의 참조번호를 기술하는 방법으로 그 제시가 이루어지는 보증서임을

3) 황민택, 「국제지급보증 주요 조항 및 기타 법적인 사항 해설」, 국민은행, 2002. 12, 11면.

4) URDG 758 제15조.

5) URDG 758 제14조(a)(b)(c).

확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규칙 제20조(지급청구의 심사 기간)에 규정된 심사기간은 그 확정일자부터 개시된다. 본 항의 어떠한 규정도 보증서의 연장이 되지 않으며, 당해 서류가 관계되는 지급청구를 확정하기 위해 별도로 제시되는 서류에 관한 본 규칙 제15조 제a항이나 제b항의 요건을 제한하지 아니한다.⁶⁾

그리고 보증서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지급청구나 보완 진술을 포함하여 보증의뢰인이나 보증수익자에 의해 발행되었거나 또는 그들을 대신해서 발행된 서류는 보증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 이외의 여타의 자에 의하여 발행된 서류는 어떠한 언어로도 작성될 수 있다.⁷⁾ 그 지급청구는 채무자의 기초계약에 대한 불이행 진술서와 청구용 환어음만 첨부하면 보증은행으로부터 보증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물론 제시의 일치성을 전제로 지급된다. 상업신용장은 수익자가 그 매매계약을 확실하게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제시로 지급청구 및 결제된다. 반면 은행보증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진술서의 제시로 지급청구 및 지급된다. 그리고 상업신용장은 기초계약을 이행했다는 근거서류에 대한 지급청구 및 그 결제가 이행된다. 반면 은행보증제도는 통상적으로는 지급청구 및 그 결제가 이행되지 않는다. 즉 은행보증 하에서의 지급청구서의 제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⁸⁾ 즉, 그 근거가 되는 기초계약을 그 상대방의 위반으로 보증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행보증은 그 기초거래가 정상적이고 적법하게 이행된다면 그 것으로 보증거래는 모두 종료되기 때문에 보증거래당사자 모두 그 목적을 달성하고 충족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은행보증은 보증계약의 기초가 되는 기초계약상 의무 또는 채무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의무불이행 진술서의 제시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

6) URDG 758 제14조(e)(f).

7) URDG 758 제14조(g).

8) <http://beta.austlii.edu.au/au/journals/BondLRev/1999/5.html>(2010. 9. 22): 채진익, "은행보증제도에서 지급청구와 그 이행상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6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1, 224-225면.

(2) 의무불이행과 그 진술서

화환신용장과 달리 은행보증거래에서는 개설은행에 대한 보증수익자의 지급청구권은 보증수익자에 대한 보증의뢰인의 기초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⁹⁾

이에 따라 URDG 758 제15조에서는 보증수익자의 '의무불이행 진술서'(a statement of breach)의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은행보증제도 하에서는 화환신용장과 달리 많은 서류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기초계약상의 의무불이행 또는 채무가 정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보증수익자의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한 진술서(simple statement)의 제시만으로 보증금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요건은 은행보증서가 준거법원으로 URDG 758을 채택하고 있고, 또 본 요건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한 적용된다. 결국은 은행보증거래에서 지급청구는 의무불이행 진술이 그 청구에서 기술되거나 또는 별도의 서류로 첨부되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¹⁰⁾

본 조항의 주된 의도는 수익자에게 그 지급청구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단순한 의무불이행 진술서를 보증수익자가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부당한 또는 사기적인 지급청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당해 조항은 기본 실무지침을 제공하고 또 보증수익자의 곤란한 의무라기보다는 불확실한 사고(hidden surprises)에 대한 보호책이다.¹¹⁾ 청구은행보증은 기초계약상 의무불이행 또는 계약위반 및 이와 유사한 취지의 문언이 있는 경우에 보증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지급수단이라는 명확한 진술을 URDG 758 제1조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보증서에 이러한 의무불이행 진술서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 예컨대 은행보증서상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또 보증수익자가 이를 개설은행에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의뢰인이 그 보증서

9) 이상훈, "보증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의 지급이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국제상학』, 제19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 159면.

10) N. D. George, "Should a 'statement of breach' be required in the URDG", *DCInsight*, Vol 15 No 2, April-June 2009, p.16: 채진익(2010), 전계논문, 236면.

11) N. D. George, "Four report on guarantee and the URDG revision", *DCInsight*, Vol 16 No 2, April-June 2010, p. 12: 채진익(2010), 전계논문, 236면-237면.

에 약정된 보증금액을 지급할 의도가 없고, 당해 은행보증서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데, 보증은행이 지급한 경우이다. 당해 보증은행은 그 서류 제시가 일치했기 때문에 지급했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그 보증의뢰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본 규칙 제15조를 근거로 보증은행의 지급행위를 당연히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¹²⁾

그렇지만 의무불이행 진술서는 적법한 제시를 위해 그에 대한 모든 요건을 보증서 자체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 진술서는 적법한 제시를 위한 여러 요건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은행이 그 발급에 관계한다면 당해 보증서에 제15조의 요건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¹³⁾ 그러나 은행 보증거래에서 실무상 지급청구는 그 특성상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무불이행에 대한 보증수익자의 진술은 통상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고 당연하다고 본다. 더욱이 의무불이행 진술은 별도의 서면으로 제시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청구서상에 진술로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려하는 바와 같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¹⁴⁾ 다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증업무 담당자는 이 점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Ⅲ. 서류조건의 심사기준과 그 일치성

1. 서류조건의 심사기준

(1) 문면심사

URDG 758 제6조에서는 "보증은행은 그 서류가 관계할 수 있는 물품, 서비스 또는 이행이 아닌 서류로 거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규칙 제19조 (a)항에서는 "보증은행은 제시만을 기초로 그 제시가 문면상 일치하게 보이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은 UCP 600 제5조 및

12) N. D. George(2009), *op.cit.*, p.16.

13) Roy Good, "ICC approves revised rules on demand guarantees", *DCInsight, Vol 16 No 1*, January-March 2010, p.17.

14) 채진익, 전계논문, 247면 일부 수정.

제14조 a항과 문맥 및 내용적으로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 서류심사에 관해 UCC 제5조에서는 신용장의 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게 보이는" 서류를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ISP98 제4.01조에서도 "제시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보증신용장의 보증조건과 그 제시를 문면상 일치하는지"를 심사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보증 및 신용장거래에서 지급청구에 대한 지급여부의 판단은 서면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은행보증을 따른 보증은행의 의무는 지급청구서 및 보증서에 명시된 약정서류를 제시하여 그 보증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류심사에 있어서 보증은행이 보증의뢰인의 의무불이행 등과 같은 외부적 사실(external fact)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URDG 758 제5조 (a)항에서는 "보증은 본질적으로 그 기초계약 및 그 신청서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그리고 그 보증은 그러한 계약관계와는 결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 기초계약을 확인하기 위한 보증서에서의 참조사항은 보증서의 독립적 성격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본 보증서상에서 보증은행의 지급확약은 보증은행과 보증수익자 간의 관계 이외의 어떠한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항변에 지배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ISP98 제1.06조 (a)항에서는 보증신용장은 취소불능하고 독립적이며 서류적이라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으며, 또 본조 (d)항에서는 "보증신용장은 서류적이기 때문에 보증은행의 의무는 문면상 서류제시와 요구된 서류심사에 달려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은행은 문면상 서류심사 책임이 있으며, 서류문면 이상을 검토할 의무가 없다.¹⁵⁾ ISP98 제4.01(b)조는 제시가 일치하게 보이는지는 보증신용장에 기술된 조건과 "문면상 제시"를 심사함으로써 결정되며, 보증신용장의 문맥을 고려하여 이들 규칙에 의해 해석되고 보완되어야 한다.¹⁶⁾

은행에서 서류심사 의무가 서류심사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은 그의

15) James E. Byrne and James G. Barnes (ed.), *The Officia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1998, p.140.

16) ISP98 제4.01조 (b)항.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여 보증의뢰인은 은행에 추심을 지시한 서류의 보호를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보증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보이는 서류를 제시하는 것이다.¹⁷⁾ 기초계약의 이행에 대해 부적합하더라도 조건과 서류가 일치되면 지급된다. 즉, 서류가 불일치하면 서류 이외의 증거를 통해 기초거래의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적합성이 증명되더라도 지급되지 않는다.¹⁸⁾

따라서 보증은행은 서류의 문면 상으로만 심사할 의무가 있으며, 서류 문면상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조사하거나 확인할 의무가 없다. 보증은행은 은행보증서의 발행에 대한 기초거래를 알아야 할 의무도 없고, 또 서류만을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은행과 법원 모두 인정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¹⁹⁾

(2) 문면상

여기에서 “문면상”(on their face)은 제시서류의 외관으로만 일치성 확인을 제한하는 보증은행의 의무의 결과이다. 따라서 제시된 서류의 문면 외관 이상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배제한다. 명백하게 “문면상”은 서류의 “전면” 또는 “이면”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보증서에 명시되어 제시된 서류가 서류의 전면과 그 이면에 모두 인쇄된 경우에는 보증은행은 그 양면 모두 심사해야 한다. “문면상”은 그 외관상의 일치성으로만 심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⁰⁾ 따라서 화환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은행은 은행보증서의 조건 및 URDG에 규정된 요건과 일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류의 문면 이상의 의무가 없다.

ICC의 공식견해에 따르면 “문면상 보이는” 대로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는 표현은 제시서류가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지의 여부, 서류 상호간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그 이외의 보증약정(undertaking)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

17) <http://www.law-online.co.za/IntTradeLaw/ucm%20case.htm>(2011. 3. 20)

18) [//knol.google.com/k/ying-luo/standby-letters-of-credit-and-the-isp-98](http://knol.google.com/k/ying-luo/standby-letters-of-credit-and-the-isp-98)(2010. 2. 28)

19) Thomas Song, Chang-soon, "When discrepancies should and shouldn't matter", *DCInsight*, Vol 15 No 3. July-September, 2009, p.12.

20) Georges Affaki, "A User's Handbook to the URDG", ICC Publication No. 631, July 2001, pp. 84-85.

로지 은행심사자의 서류심사를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²¹⁾ "문면"은 은행이 서류가 아마도 위조인지 또는 그 물품이 실제로 선적신고 및 선적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서류가 발행될 당시 무가치한 서류가 되었는지를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은행은 실제적 상황에는 관계하지 않는다. 단, 사기와 같은 일부 상황의 경우는 예외다.²²⁾

2. 일치하는 서류제시와 그 범위

개정 URDG 758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은행보증 하에서 “일치하는 제시란” 우선 본 보증서의 조건과 일치해야 하며, 둘째 본 보증서의 조건과 일치하는 한 본 URDG의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은행보증에 관련 약정 또는 본 URDG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표준 청구보증관행(international standard demand guarantee practice)과 일치해야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당해 보증문언은 URDG와 국제표준은행관행에 우선한다. 더욱이 그 정의에서 URDG의 조건은 URDG가 적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은행보증서의 문언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하고 있다. 은행보증서의 문언과 URDG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불일치가 발생하면 보증서의 보증문언이 URDG에 우선한다.²³⁾

이는 UCP 600 제2조에서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신용장의 조건, 본 규칙의 적용 가능한 규칙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 제시”라고 규정하고 있어 UCP의 취지를 그대로 도입하고 있다. URDG 758은 UCP 600상의 국제표준은행관행과 같은 맥락에서 “국제표준보증관행”이라는 중요한 개념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는 바, 이는 UCP와 마찬가지로 URDG도 완전한 규범(exhaustive rules)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²⁴⁾ URDG에 명시되지

21) Charles Del Busto, *UCP 500 & 400 Compared - An Article-by-Article detailed analysis of the new UCP 500 compared with the UCP 400*, ICC Publication No. 511, 1993, p.39.

22) <http://www.juridicum.su.se/transport/Forskning/Uppsatser/EssayKarl.pdf>(2010. 3. 22)

23) N. D. George, *op.cit.*, 2010, pp. 10-11; 채진익(2010), 전제논문, 230면.

24) 박세운·한기문·허해관, "개정 청구보증통일규칙 주요 내용", 『국제상학』, 제25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10, 191면.

않은 보증관행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당사자는 그 입증에 의하여 그에 따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더욱이 ISBP 681의 예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장차 국제표준보증관행도 그 내용이 축적되는 때에는 별도의 문서로 발간될 수 있을 것이다.²⁵⁾

한편 ISP98 제3.1조에서는 일치하는 제시에 관해 우선, 모든 제시서류가 보증신용장에 명시된 보증조건에 일치해야 하며, 또한 보증신용장은 제시의 시기, 제시장소, 피제시인, 결제방법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그 조건에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보증신용장에 그와 같이 명시되지 않은 한, 본 규칙의 규정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URDG 및 UCP 600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보증신용장은 제시의 시기, 제시장소, 피제시인, 결제방법이 명시되어야 하며, 그 조건에 일치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점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은행보증서이든 보증신용장이든 그 특성상 명시되어야 하고, 또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으로 생각된다.

3. 제시의 일치성 기준과 그 판단

(1) 제시서류의 일치성과 URDG 심사기준의 변화

은행은 제시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거절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전통적으로 "엄격일치성의 원칙"이라 칭한다. 이 원칙은 1927년 *Equitable Trust Co. v. Dawson Partners Ltd* 사건에서 영국법원의 판결에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법원의 판결과 UCP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일치성의 기준이 완화되어 왔으며, URDG 758에서도 UCP 600의 심사기준을 수용하고 있다.

UCP 600 제14조 (d)항에서는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not be identical to, but must not conflict with)"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일치성에 대한 새로운 심사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충되지 아니한"이란 언급은 문자적 엄격 일치성을 요구하지 않는다.²⁶⁾

25) N. D. George, *op.cit.*, 2010, p.11.

26) [http://www.evancarmichael.com/Legal/2112/\(2010. 2. 15\)](http://www.evancarmichael.com/Legal/2112/(2010. 2. 15)).

URDG 758 제19조에서도 UCP 600과 유사한 취지의 은행보증에 대한 심사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즉 "보증서에 요구된 서류상의 자료는 그 서류, 보증서 및 이들 규칙의 맥락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그 서류나 그 이외의 기타 모든 서류 또는 보증서상의 자료와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이와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의 URDG 458 제9조에서는 "보증은행은 청구서를 포함하여 보증서에 명시되어 제시된 모든 서류를 그 보증서의 조건과 문면상(on their face) 일치하게 보이도록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는 UCP 500 제13조 (a)항에서 "은행은 신용장에 규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URDG 758에서의 일치성 기준의 변화는 UCP 600에서의 변화와 유사하다. 우선 개정 전 URDG 458에서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라는 요건이 삭제되었다. 이는 UCP 600의 삭제취지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더 포괄적이고 정확한 요건으로 대체되었다. "상당한 주의"라는 문언이 삭제되었더라도 개설은행(보증은행)은 부주의 또는 태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은행은 제시서류를 심사하는데 표준서류심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²⁷⁾ 따라서 보증은행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국제표준은행관습"으로 성실하고 합리적 주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²⁸⁾

그리고 제시서류들 상호간 상충성, 즉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일치성 심사기준의 도입이다. 이 또한 UCP 600 제14조 (d)항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상충하지 않는"(not conflict with)이라는 문언은 "불일치"(inconsistent)하다는 문언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들 차이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나, 그 기준은 더 진보적(liberal)인 것으로

27) John F. Dolan, "Analyzing Bank drafted Standby Letter of Credit Rules,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ISP98)", *Wayne Law Review*, Vol. 45, 1999, p.1887.

28) Paul S. Turner, "The United Natio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tandby Letters of Credit: How Would It Change Existing Letter of Credit Law in the United States?", *The Banking Law Journal*, Warren Gorham & Lamont Inc., Vol. 114, No. 9; John F. Dolan, *op.cit.*, p.1887.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전체적이고 비즈니스 목적에서 서류상의 데이터와 관계없는 단순한 기술적 이유로 하자를 발견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다. 즉, "상충하지 않는"(not conflict with)이라는 언급은 문언적인 복제를 요구하지 않는다.²⁹⁾ 즉, 여기에서 "상충되지 아니한"이란 언급은 문자적 엄격 일치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 UCC(1995) 제5-108조에서는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히 일치하게 보이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³⁰⁾

그러나 은행보증에서 이러한 변화는 그 중요성이 화환신용장에 비해 크지 않다. 즉, 은행보증거래는 통상적으로 "불이행 진술(서)"만으로 지급청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시서류의 불일치가 거의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not be identical to, but shall not conflict with)"는 새로운 심사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신용장거래 보다는 그 의미가 적다. 그런데 은행보증거래는 화환신용장과 달리 제시서류에 대한 위조와 사기 등의 부당청구가 더 용이하다. 따라서 은행보증거래 전반에 항상 세심한 주의와 함께 그 기초거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 URDG와 ISP98

한편 ISP98 제4.03조에서는 “오직 보증신용장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서류 상호간의 불일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들 규칙과는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다른 서류와의 불일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규정된 서류심사에 있어서 비서류 조건을 다루고 있다. 본 규칙 제 4.11조에서 보증은행은 보증서의 비서류 조건과 불일치(또는 상충)에 대해 규정된 서류상의 데이터를 심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³¹⁾

그 한 가지 이유는 보증신용장은 거래금액의 일부분만 담보하기 위해 종종 발행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USD50,000의 이행보증 신용장에서 기초계약 금액의 10%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행보증 신용장은 US\$500,000의 거래금액을 명시하고 있는 송장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29) James E. Byrne, *op.cit.*, pp. 135-136.

30) [http://www.evancarmichael.com/Legal/2112/\(2010. 2. 15\)](http://www.evancarmichael.com/Legal/2112/(2010. 2. 15)).

31) Pavel Andrlle, "Two articles on the new URDG 758", *DCInsight, Vol 16 No 4*, October-December 2010, p.15.

수 있다. 그 송장금액은 USD500,000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그 발행금액은 USD50,000에 불과하므로 환어음의 발행증명서상의 데이터(즉 USD50,000)와 그 송장상의 금액(USD500,000)과 상충된다는 점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는 ISP98이 다른 제시서류 상호간이 아닌 왜 제시서류와 보증신용장의 조건과의 일치성을 요구하는지를 설명한다.³²⁾

이와 같은 보증신용장은 보증수익자가 스스로 작성한 서류를 제시하면 기본계약상 의무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금액이 지급되며, 보증의뢰인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담보수단이라는 점에서 청구은행보증이라고 칭하는 지급보증서와 매우 유사하다.³³⁾ 보증신용장과 지급보증서는 그 기능면에서 이와 같은 유사성으로 인하여 양자는 대부분 동일한 법리를 적용받는다.³⁴⁾ 즉 보증신용장은 은행보증과 명칭이 다르고 이용범위가 넓은 뿐, 기초계약상 채무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로서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³⁵⁾

이와 같이 은행보증과 보증신용장은 그 목적과 기능 면에서 유사한데 서류심사기준에 있어서는 URDG 758과 ISP98이 상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즉 URDG 758 제19조 b항에서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이와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새로운 심사기준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위 사례의 경우에도 본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따라서 ISP98도 향후 개정을 통하여 URDG 및 UCP 600과 동일한 취지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ISP98 제 4.01조 (b)항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증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문면상 일치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어 URDG 758과 UCP 600에서의 일치성 기준보다는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큰 의미가 없다

32) King Tak Fung, UCP 600 Legal Analysis and Case Studies, *P.E.E.R. Consultancy Ltd.*, 2008, p.150.

33) Herbert A. Getz, "Enjoining the International Standby Letter of Credit : The Iranian Letter of Credit Cases",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1, Winter 1980, p. 197.

34) *Edward Owen Engineering Ltd. v. Barclays Bank International Ltd.*(1978) 1 Lloyd's L.Rep. 166; *Sinason-Teicher Grain Corp. v. Oilseeds Trading Co.*(1954) 1 Lloyd's L. Rep. 376; 채진익(2009), 전계논문, 222-223면.

35) 박세운, "ISP98의 특징과 UCP 600과의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2, 54면.

고 볼 수 있다. 실무적 및 의미적으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일 것 같다.

4. 서류심사기간

(1) 관련조항과 그 해석

URDG 758 제20조에서는 "청구서의 제시가 추후에 완료될 것이라고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은행은 제시일 다음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 그 지급청구서를 심사하여 그 청구서가 일치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은 제시일 이후에 보증서의 유효기일에 의해 단축되거나 또는 달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제시가 추후에 완료될 것이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그 제시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이전의 URDG 458 제10조 (a)항의 "보증은행은 은행보증서에 의거한 지급청구서와 그 보완서류를 심사하여 그 지급청구를 지급 또는 거절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time)을 가진다."라고 규정한 조항의 변화이다. 다만 본 조항은 개정 전 UCP 500 제13조 (b)항의 제7영업일 내의 "합리적인 기간"과 비교해 보면 UCP 500 제13조 (b)항의 구체적 기간(7영업일)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 기간에 대해 ICC 은행위원회와의 2001년 12월 1일자 공식견해에 따르면, 불이행 진술서가 첨부된 지급청구서를 심사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은 3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³⁶⁾ 그러나 은행보증서가 복잡하고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또는 명시되어 제시되는 일부 또는 모든 서류가 보증서의 언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3영업일의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단, 보증은행이 그 청구서에 대한 지급 또는 수리 여부는 합리적인 기간내 결정되어야 한다.³⁷⁾

또한 보증은행이 보증의뢰인의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보증은행은 위에 언급된 3영업일 또는 URDG 458 제10조에 규정된 "합리적인 기간"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선 보증은행은 자신의 주된 지급확약인 보

36) Document 470/TA.467 rew., attached in Annex 3.

37) Georges Affaki, *op.cit.*, p.87.

증서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증의뢰인의 의사결정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둘째, 본 규칙 제10조의 합리적인 기간은 그 보증서에 명시되어 제시된 서류의 수와 복잡성을 근거로만 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증은행 직원인 서류심사자의 전문지식과 그 직원들이 이용하는 기술적 수단을 근거로 산정되어야 한다.³⁸⁾ 물론 어떠한 경우든 은행보증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기간인지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은행보증은 화환신용장과는 달리 심사대상 서류가 일반적으로 지급청구서와 그 보완서류(불이행 진술서) 뿐이므로 서류심사는 간편하기 때문에 그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분쟁의 여지가 있어왔다. 그동안 은행의 보증거래의 준거법으로 UCP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UCP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경우도 많았다.

(2) UCP 600의 개정과 URDG

그러나 URDG의 개정으로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본 조항의 개정은 UCP 600 제14조 (b)항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UCP 600의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쟁점은 곧 은행보증거래에도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이에 UCP 600의 개정배경과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UCP 600 제14조 (b)항은 서류심사를 위한 최대기간을 7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단축하고 그 심사기간 내의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언급은 삭제되었다.³⁹⁾ UCP 500 제13조의 서류접수 익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서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대부분 은행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그 이유는 이에 대한 적용기준의 부재에 기인했으며, 또한 합리적인 기간을 서류접수 익일로부터 7영업일 모두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했다.⁴⁰⁾ 이와 같은 서류심사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의 삭제와 제7영업일을 제5영업일로의 대체는 신용장거래의

38) Georges Affaki, *op.cit.*, p.87.

39) Frank Reynolds, "The final UCP 600: A trader's view", *DCInsight Vol. 12 No. 4* October - December 2006, available at Collyer, *Insights into UCP 600*, ICC Service Publication No. 682, 2008, p.193.

40) The UCP 600 Drafting Group(2007), *Commentary on UCP 600*, ICC Publication No. 680, 2007, p.62.

프로세스를 촉진하고 그 유용성을 높인다.⁴¹⁾ 특히 "합리적인 기간"의 생략은 해석 차이를 해결한다고 본다.⁴²⁾ UCP 500 제13조의 개정된 주된 의도는 결국 "합리적인 기간 규칙"(reasonable time rule)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⁴³⁾

이와 같은 개정이 UCP 500의 본 조항에 대한 자의적 해석여지를 확정기간으로 대체하는지 또는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문언을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수 있다. 즉, "최대 5영업일"이라는 표현은 5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은 합리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⁴⁴⁾ UCP 600에서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문언을 삭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용장 전문가들은 "최대"(maximun)라는 표현이 은행이 각 제시의 일치성을 결정하기 위해 5영업일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인지의 우려도 있다. "최대"라는 표현의 명시는 은행이 서류심사를 완료하는 즉시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⁴⁵⁾ 즉 제5영업일이 모든 경우에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 서류의 경우는 1~2일의 심사기간이면 충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⁶⁾

이 문제에 관해 저자의 견해는 은행보증이든 신용장거래이든 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시서류를 심사하기 위해 최대 5영업일까지 행사할 수 있는

41) TPradeep Aneja, "UCP 600: A document restoring the credibility of L/Cs", *DCInsight Vol. 12 No. 4* October - December 2006, available at Gary Collyer(2008), *op.cit.*, p.189.

42) Charles Debattista, "The New UCP 600 - Changes to the Tender of the Seller's Shipping Documents under Letters of Credit", *J.B.L.* 2007, Jun, available at James E. Byrne and Christopher S. Byrnes, *Annual Survey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08, p.132.

43) Pavel Andrlé, "Ambiguities in the new UCP", *DCInsight Vol. 13 No. 3* July - September 2007, available at Gary Collyer(2008), *op.cit.*, p.280.

44) E.P. Ellinger,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 Their Development and The Current Revisions", *LMCLQ* 129-271, 2007, available at James E. Byrne and Christopher S. Byrnes(2008), *op.cit.*, p.150.

45) James. E. Byrne(2007), p.136.

46) Kim Christensen, "'Reasonable' refusals", *DCInsight, Vol 11 No 1*, 2005, pp.14 -15; 서정두, "UCP 600 서류심사기준의 문제점과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학회지』 제33권, 2007, 112면.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즉 은행은 서류심사를 위해 5영업일 모두 누릴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은행들이 "합리적인 기간"라는 의미와는 무관하게 서류심사를 위해 5 또는 7영업일 모두 행사해 오고 있었다. 더욱이 은행이 건별로 "최대 5영업일" 이내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쨌든 UCP 600과 URDG 758에서 "합리적인 기간"의 삭제와 5영업일의 기간의 제한은 종전의 규정보다 더 개선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현장에서의 실무자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V. 비서류 조건의 심사기준과 그 일치성

1. UCP와 ISP 비서류 조건

UCP 400에서는 비서류적 조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지만, UCP 500(제13조 c항)에서부터 규정되었다. 즉 서류제시에 대한 언급 없이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언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무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UCP 600의 입장도 화환신용장이 일치성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어떤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마치 그 조건이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하고 이를 무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UCP 600 제14조(h)). 어떠한 자료가 상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UCP 600 제14조(d)에 의거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UCP 600 제14조(h)항으로 다루어지는 그 쟁점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조건은 서류와 명백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의 약정에 의해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다.⁴⁷⁾ 따라서 은행은 신용장에서 조건만 있고 그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조건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하면 될 것이다.

한편 미국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제5-108조(g)항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동항은 "만일 제5-102조

47) The UCP 600 Drafting Group, *op.cit.*, p.66.

(a)항(10)호에 따른 신용장에 해당하는 화약이 비서류적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개설인은 비서류적 조건을 무시하고 마치 그것이 명시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⁴⁸⁾ 이와 같이 UCC는 신용장을 “서류” 제시조건의 지급화약으로 정의한다.⁴⁹⁾

그리고 ISP98은 UCC 또는 UCP에도 찾아볼 수 없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채택한다. ISP98 제4.11조에서는 비서류적 조건에 대해 “보증신용장이 당해 조건의 증명을 위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서 개설은행 자신의 기록으로부터 또는 개설은행의 통상적인 업무 내에서 그 이행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조건”으로 정의되며 그러한 조건은 무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⁰⁾ 즉 ISP98에서는 두 가지 요건, 즉 (i) 어떤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고, (ii) 당해 조건의 준수 여부를 개설은행 자신의 기록 또는 통상적 업무로부터 개설은행이 직접 결정할 수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는 비서류 조건으로 본다. 이 중에서 후자의 요건은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다.⁵¹⁾

2. 비서류 조건과 URDG

URDG 758 제7조에서는 “보증서는 일자나 기간의 경과 이외에는 그 조건을 준수하였음을 나타내는 서류를 명시함이 없이 어떤 조건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보증서에 그러한 어떠한 서류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조건의 이행여부가 보증은행 자신의 기록이나 또는 그 보증서에 명시된 인덱스(index)로부터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보증은행은 그러한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조건을 무시한다. 다만 보증서에 명시되어 제시된 서류에 나타나 있는 데이터가 보증서상의 데이터와 상충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8) 석광현,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무역상무학회지』 제2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4. 2, 139면.

49) http://www.eagletraders.com/advice/doc_standby_letters.htm(2010. 2. 28).

50) http://www.eagletraders.com/advice/doc_standby_letters.htm(2010. 2. 28).

51) 박세운, 전계논문, 67면.

보증은행은 보증서의 발행자로서 왜 그 것을 발행하고 이를 무시하는 가? 아마도 보증수익자는 보증서에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조건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보증은행은 보증서의 발행을 요청하는 지시당사자의 요청서에 그러한 지시를 무시할 것이다.⁵²⁾

이와 같은 비서류 조건은 URDG는 458에서는 규정되지 않았으나, URDG 758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종래 청구보증업무에서 은행보증서상 비서류 조건이 명시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던 바, URDG458에서는 그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신용장업무와 보증업무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⁵³⁾ 개정 URDG 758은 기본적으로 ISP98에서 규정한 취지와 유사하며, UCP 600 제14조 (h)항 및 ISP98 제4.11조의 이념을 도입했다고 볼 수 있다.⁵⁴⁾

여기에서 URDG 758과 ISP98은 거의 일치하나, UCP 600 제14조 (h)항과는 그 의미상 차이가 있다. 즉 UCP 600과는 달리 URDG 758의 "보증인 자신의 기록이나 또는 은행보증서에 명시된 인덱스(index)로부터 결정될 수 없는 경우"와 ISP98의 "개설은행 자신의 기록 또는 개설은행의 통상적 업무로부터 그 이행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규정되어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수익자가 개설은행(보증은행)에 특정금액을 예치하기로 한다." 라고 규정했다면, 그 조항은 UCP 하에서는 비서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시되어야 하지만, ISP 또는 URDG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개설은행(보증은행)은 자신의 기록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그 금액이 예치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증조건을 이행했는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⁵⁾

그렇지만 비서류 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화환신용장과 달리 은행보증은 제시서류가 간단하고 또한 은행보

52) George, N. D.(2010), *op.cit.*, p.10.

53) 박세운·한기문·허해관, 「ICC 청구보증통일규칙 개정동향」, 『한국무역학회 발표논문』, 한국무역학회, 105면.

54) Glenn Ransier, "URDG 758 has benefits for all parties", *DCInsight*, Vol 16 No 2, April-June, 2010, p.11.

55) http://icc-commodities.com/files/Documentary_and_Standby_Letters_of_Credit.pdf (2010. 3. 25).

증은 일반적으로 화환신용장에 비해 그 특성상 비서류 조건이 많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은행보증제도에서 비서류 조건은 신용장거래와는 달리 "개설인 자신의 기록 또는 그 보증서에 명시된 인덱스(index)로부터 개설인이 결정할 수 없는 조건"에 대한 요건에 유의하여 그 이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은행보증은 서류 대조보다는 그 조건의 이행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비서류 조건의 일치성과 유의점

화환신용장은 그 발행자체가 당해 기초계약의 이행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의 제시를 전제로 지급되는 반면 은행보증은 기초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단순한 진술서에 의한 지급청구를 메커니즘으로 하고 있다. 화환신용장거래는 개별거래 시마다 관련 서류의 일치성 여부에 대한 서류심사가 필요하며 또한 그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 은행보증은 특성상 그 개설근거가 되는 기초거래가 이행되면 당해 거래는 그 것으로 종료된다. 다만 은행보증은 서류심사가 일반적으로 단순한 진술서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하고 별 어려움이 없다. 반면, 은행보증서에서 비서류적 조건은 비교적 많이 규정되며, 또 그 중요성이 클 수 있다.

UCP 600 제14조 제h항에서는 해당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면 비서류 조건으로 보는 반면, URDG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 즉 두 가지 요건, 즉 (i) 어떤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고, (ii) 보증조건의 이행여부를 개설은행 자신의 기록 또는 은행보증서에 명시된 인덱스(index)로부터 결정될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서류 조건으로 본다. 예컨대 은행보증서에서 “본 보증서는 보증수익자가 지급불능인 경우에 지급될 것이다.” 이 경우 UCP 600과 URDG 및 ISP98 모두 비서류 조건으로 본다. 그리고 은행보증서의 조건 중에서 “본 보증서는 보증수익자가 보증의뢰인을 수익자로 USD50,000의 이행보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지급될 것이며, 그 이행보증은 우리를 통해 통지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된 경우이다.

이 조건은 ISP98 제4.11조에 의하면 개설은행이 자신의 기록에서 또는 자신의 일상적인 영업범위 내에서 관련 조건의 이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

문에 비서류 조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UCP 600 제14조 (h)항 첫 번째 조건(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 번째 조건(그 조건의 이행여부를 개설은행 자신의 기록 또는 영업활동으로부터 개설은행이 직접 결정할 수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 개념이 UCP 600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⁵⁶⁾ 이 점에 있어서는 URDG의 경우에도 그 결과는 ISP98과 같다.

그리고 은행보증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즉 "본 보증서는 우리 은행에서 보유 중인 개설의뢰인의 계좌(A/C No. 1134567)에 송금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 사례에서는 그 송금을 증명하는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가 없기 때문에 비서류 조건으로 간주되어 무시되어야 하는가? 수익자는 그 것이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건이 구속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것은 은행보증서의 유효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수익자 또는 지정은행은 UCP 600 제14조 (h)항에 의거함으로써 그러한 명시조건을 묵인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 신용장이 더 자세히 기술했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우리(즉 개설은행)는 일단 USD10,000의 송금을 받았다면 우리는 제1 은행영업일 내에서 그 금액의 수취를 확인하는 인증된 메시지를 그 통지은행에게 송부할 것이며, 그 인증된 메시지는 본 은행보증의 환어음 발행을 위해 제시되어야 한다." 이 조건은 비서류 조건에서 서류조건으로 전환될 것이다.⁵⁷⁾

V. 결 론

은행보증제도는 국내외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담보할 목적으로 사용하며, 약정기한에 보증의뢰인이 보증수익자에게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은행이 보증의뢰인을 대신하여 약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은행보증제도의 이용을 확대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유용한 제

56) King Tak Fung, *op.cit.*, p.155.

57) King Tak Fung, *op.cit.*, p.74.

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보증제도는 절차상으로 간편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에 노출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그 기초계약의 의무불이행시 보증수익자는 통상 지급 청구서와 그 보완서류인 의무불이행 진술서(증명서)만으로 지급청구하기 때문에 그 절차적으로 사기 또는 부당 청구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제시서류는 간편하지만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서류심사의 절차에 대한 중요성은 더 크다. 지급청구를 위해 제시되는 모든 서류는 적법하고 일치해야 하며, 또한 보증서 유효기일 이전에 그 보증서의 제반 조건에 따라 지급청구를 해야 한다. 이 때 화환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제시서류의 일치성 기준에 대한 이해와 그 판단의 중요성이 크다.

우선 은행보증서에 의한 지급청구 시 제시서류의 일치성 기준이다. 보증거래에서도 화환신용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증수익자의 지급청구는 그 제시와 보증조건의 일치성을 전제로 한다. 은행보증서상의 모든 데이터는 그 보증서의 구체적인 요건, 즉 보증조건과 일치해야 한다. 둘째, 약정된 서류상의 데이터는 그 서류상의 다른 데이터와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한 서류상의 데이터는 그 이외의 모든 요구서류상의 데이터와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URDG 758 제19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서류상의 데이터는 비서류 조건을 포함하여 보증서상의 어떠한 데이터와도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URDG 758 제7조).

그러므로 이와 같이 URDG의 서류심사에 대한 접근방법은 UCP 600과 유사하다. 즉 본 규칙 제14조 (b)항에서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심사원칙을 URDG 758에서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한편 ISP98 제4.03조에서는 "오직 보증신용장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서류 상호간의 불일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들 규칙과는 다소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URDG의 심사법리로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비서류 심사에 있어서 새로이 신설된 URDG 758 제7조는 ISP98 제4.11조와 유사하나, UCP 600 제14조 (h)항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즉 UCP 600과는 달리 URDG 758의 "보증인 자신의 기록이나 또는 은행보증서에 명시된 인덱스(index)로부터 결정될 수 없는 경우"로 규정되어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서류 조건은 신용장과 달리 그 거래의 특성

상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거래에서 은행보증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크지만, 은행의 입장에서 그 개설 시 보증조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지급청구 시에는 그 절차가 간편하고 그 심사 또한 복잡하기 않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은행보증을 개설하고 종료할 때까지 그 보증거래의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 확인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은행보증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유용한 수단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심사기준에 대한 URDG 758의 조항을 ISP98 및 UCP 600 등과 비교·검토하여 유의점과 그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으나, 향후에는 개정 URDG가 실제로 적용되는데 있어서 모순점과 각 당사자 입장에서의 이해관계를 검토하고 이를 규정에 대한 통합방법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박세운·한기문·허해관, 「ICC 청구보증통일규칙 개정동향」, 『한국무역학회 발표논문』, 한국무역학회, 2009, 105면.
- , "ISP98의 특징과 UCP 600과의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2, 54면.
- 서정두, "UCP 600 서류심사기준의 문제점과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학회지』 제33권, 2007, 112면.
- 석광현,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 『무역상무학회지』 제22권, 한국 무역상무학회, 2004. 2, 139면.
- 이상훈, "보증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은행의 지급이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국제상학』, 제19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 158면.
- 채진익, "은행보증제도에서 지급청구와 그 이행상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6권 제1호, 한국무역학회, 2011, 224면.
- , 「글로벌 전자무역에서 은행보증제도의 도입과 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2009, 218면.
- 황민택, 『국제지급보증 주요 조항 및 기타 법적인 사항 해설』, 국민은행, 2002. 12.
- Affaki, Georges, *A User's Handbook to the URDG, ICC Publication No. 631*, July 2001, pp. 84-85.
- Andrle, Pavel, "Two articles on the new URDG 758", *DCInsight, Vol 16 No 4*, October-December 2010, p.15.
- Andrle, Pavel, "Ambiguities in the new UCP", *DCInsight Vol. 13 No. 3*, July - September 2007
- Byrne, James E. Byrnes, *Christopher S., Annual Survey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08, p.132.
- , *The Officia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 Practice, Inc., 1998, p.140
_____, *The Comparison of UCP 600 & UCP 500*, ICC Publication No. 600S., 2007, p.136.
- Collyer, Gary, *Insights into UCP 600*, ICC Service Publication No. 682, 2008, p.211.
- Christensen, Kim, "'Reasonable' refusals", *DCInsight*, Vol 11 No 1, 2005, pp.14 -15.
- Del Busto, Charles, *UCP 500 & 400 Compared*, ICC Publication No. 511, 1993, p.39.
- Dolan, John F., "Analyzing Bank drafted Standby Letter of Credit Rules, The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ISP98)", *Wayne Law Review*, Vol. 45, 1999, p.1887.
- Debattista, Charles, "The New UCP 600 - Changes to the Tender of the Seller's Shipping Documents under Letters of Credit", *J.B.L.* 2007.
- Fung, King Tak, *UCP 600 Legal Analysis and Case Studies*, P.E.E.R. Consultancy Ltd., 2008, p.150.
- Getz, Herbert A., "Enjoining the International Standby Letter of Credit : The Iranian Letter of Credit Cases",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1, Winter 1980, p. 197.
- George, N.D., "Four report on guarantees and the URDG revision", *DCInsight*, Vol 15 No 2, April -June, 2009, p.10.
-----, "Should a 'statement of breach' be required in the URDG", *DCInsight*, Vol 15 No 2, April-June 2009, p.16.
- Goode, Roy, "ICC approves revised rules on demand guarantees", *DCInsight*, Vol 16 No 1, January-March 2010, p.4.
- Krazovska, Danute, "Impact of the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on a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University of Aarhus*, 2008, p.9.
- Langerich, Reinhard, "An improved UCP that has solved many problems", *DCInsight* Vol. 13 No. 1, January - March 2007
- Reynolds, Frank, "The final UCP 600: A trader's view", *DCInsight* Vol.

- 12 No. 4, October – December, 2006,
- Ransier, Glenn, “URDG 758 has benefits for all parties”, *DCInsight*, Vol 16 No 2, April-June 2010, p.11.
- Turner, Paul S., "The United Natio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tandby Letters of Credit: How Would It Change Existing Letter of Credit Law in the United States?", *The Banking Law Journal, Warren Gorham & Lamont Inc.*, Vol. 114, No. 9.
- Thomas Song, Chang-soon, “When discrepancies should and shouldn't matter”, *DCInsight*, Vol 15 No 3, July-September 2009, p.12.
- Taneja, Pradeep, "UCP 600: "A document restoring the credibility of L/Cs", *DCInsight* Vol. 12 No. 4, October – December 2006.
- The UCP 600 Drafting Group, *Commentary on UCP 600*, ICC Publication No. 680, 2007, p.62.
- Carnell, National Bank Lending Limit Rules 12 C.F.R. Part 32, August 25, 2006.
- Document 470/TA.467 rew., attached in Annex 3.
- <http://www.law-online.co.za/IntTradeLaw/ucm%20case.htm>(2011. 3. 20)
- <http://knol.google.com/k/ying-luo/standby-letters-of-credit-and-the-isp-98>(2010. 2. 28)
- <http://www.juridicum.su.se/transport/Forskning/Uppsatser/EssayKarl.pdf>(2010. 3. 22)
- <http://www.evancarmichael.com/Legal/2112/>(2010. 2. 15).
- http://www.eagletraders.com/advice/doc_standby_letters.htm(2010. 2. 28).
- http://icc-commodities.com/files/Documentary_and_Standby_Letters_of_Credit.edit.pdf(2010. 3. 25).
- <http://beta.austlii.edu.au/au/journals/BondLRev/1999/5.html>(2010. 9. 22).

ABSTRACT

A Study on the Requirements and Compliance Standard of a Presentation for Demand for Payment under URDG

Chae, Jin IK

Bank Guarantee system is commonly used as useful financial instruments to support various overseas and domestic business activities by providing bank guarantees. Therefore, it will be able to develop as a useful socio-economic useful system.

However, some procedural problem can arise from the processes under demands for payment.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review the requirements of the demand for payment and compliance standard for the examination of a presentation under the guarantee system. It is necessary to examine main issues under the revised URDG 758. The URDG introduced the same examination principle of "need not be identical to, but shall not conflict with' as that of UCP 600. The main changes of the URDG 758 like this imply the mitigation of the compliance standard for examination.

So, This paper is to provide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gulations and laws for the examination standard and propose their implications and practical notes under bank guarantee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ill be examined the practical and legal issues focusing on the relative regulations of the revision URDG 758. It will also be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e URDG, ISP98, UCP 600 and so on.

Key Words: URDG, Bank's Guarantee System, Bank Guarantees, Demand for Payment, Examination Standard of a presentation, Compliance Standard.